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2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강승수, 권기만, 김성현, 김익수, 박세진, 박주연,
손홍섭, 윤영철, 정하영, 허 복, 황경환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2월 20일

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강승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,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)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
- 보훈예우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참고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,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먼저, 안 제8조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는 수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를, 안 제11조는 수당 지급의 중지를, 안 제12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3조는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,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